

[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]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[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]

1. 발 의 자 : 박경숙 의원 등 8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3년 5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의 혁신·변화 및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
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디지털 전환 촉진에 필요한
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용어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(안 제2조 및 안 제3조)

나.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5조)

다. 실태조사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(안 제6조 및 안 제7조)

라. 위원회의 설치·구성 및 운영 등(안 제8조 ~ 안 제11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가. 제출배경

- 경제의 지속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디지털 전환 관련 도정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함
 - 디지털 전환(Digital Transformation)이란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으로, 일반적으로 사물 인터넷(IoT), 클라우드 컴퓨팅, 인공지능(AI), 빅데이터 솔루션 등 정보통신기술(ICT)을 플랫폼으로 구축·활용하여 기존 전통적인 운영 방식과 서비스 등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함³⁾
 - 정부도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예측하고 디지털 뉴딜 사업을 국가 핵심 국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충청북도 또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나.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본칙 13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
- **안 제1조**는 이 조례의 목적 조항으로, 충청북도의 디지털 전환 촉진으로 혁신·변화 및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을 규정함
- **안 제2조**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한 것으로, 디지털 전환, 디지털 기술의 정의를 규정하여 조례의 범위를 정함

3)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, IT용어사전

- **안 제3조**는 디지털 전환과 그 기반 구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구체적인 시책이 마련되도록 함
- **안 제4조**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여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부분에 있어 본 조례가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함
- **안 제5조**는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을 3년마다,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정립하도록 함
- **안 제6조**는 디지털 기술 및 산업 관련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기초적인 근거가 충분히 준비될 수 있도록 함
- **안 제7조**는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에 재정적·행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
- **안 제8조**는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정책과 계획을 심의할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“라 한다)의 설치와 심의 및 의견 청취, 자료 등의 제출 요구에 관한 내용을 정함
- **안 제9조**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민간 전문가의 위촉을 통한 위원회 운영으로 도정의 시의적 대응을 위한 효율성을 담보하였고, 부위원장을 호선으로,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추천을 두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함
- **안 제10조**는 위원의 임기를 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구성의 균형을 위해 임기를 맞추도록 규정함

-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결을 통해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
- 안 제12조는 디지털 전환 촉진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신속한 집행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
- 안 제13조는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본 조례에 따른 사업추진을 독려하고자 함

다. 종합의견

- (필요성) 본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를 규정하여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, 디지털 전환에 대한 도정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
- (절차적 타당성) 관련 법규에 따라서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음
- (법적합성) 충청북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인력육성 등 각종 사업을 촉진, 도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법률과 충돌되는 사항이 없고, 조례안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적절한 입법이라고 판단됨